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수 방지시설 설치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6.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

경 제 도 시 위 원 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안전도시과장)
- 제출일자: 2023. 5. 26.
- 회부일자: 2023. 5. 26.
- 검토기간: 2023. 5. 26. ~ 5. 30.(5일간)

2.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달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 「주택법」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5호)
- 예산조치: 침수 방지시설 소요량 파악 후 익년도 예산 편성 예정
- 입법예고(2023. 4. 11. ~ 5. 1.): 의견없음
-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비용추계서: 생략(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와 지원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침수이력 정보제공, 설치 지원 홍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발생의 증가와 특히,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수해의 선제적인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거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 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1.6.15>

1. 시설물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 공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

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 (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2. 8. 22.]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제5조(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기본 고려사항) ① 침수 예상 구역에 지하 시설물 계획 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침수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우수가 주변 지역으로부터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 행동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단계별 계획수립) 지하공간은 대피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 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2. 2단계 : 침수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5호)**

3.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 수와 침수 예상 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 4단계 : 신속한 배수 대책

제7조(침수 방지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지하 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수 위험성에 대한 의식 고취 방안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시행
4. 지하공간 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안 제시
5.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경감 및 예방대책의 제시

제8조(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 시 시설 이용자와 차량 통행 등을 고려하여 침수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여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운행 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가 어려울 때는 일반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활용하고, 모래주머니 등은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제24조(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등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작동 여부
2. 배수설비,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3. 환기구, 물막이판, 장비 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
4. 경보방송시설, 비상조명, 대피 유도등, 진입 차단시설 등의 가동 여부
5. 대피로,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상태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